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간의 차이분석*

A Study on the Gap between Actual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Cost of Liv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성영애**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Univ.

Professor : Sung, Young-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aps among the actual cost of living,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adequate costs of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using the 2007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lderly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comparisons among the costs of living and th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each group were investig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was the highest and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was the lowest. The actual cost of living was in between. Secondly, 42.6% of elderly households belonged to Group1 (whose actual cost of living was less than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30.0% was classified into Group2 (whose actual cost of living was greater than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but less than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and the actual cost of living of the remaining 27.4% was greater than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Group3). Thirdly, income was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each group, but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different for the logistic models for Group1 and Group3 based on Group2.

▲주요어(Key Words) : 노인단독가구(elderly household), 실제생계비(actual cost of living), 주관적 생계비(subjective cost of living), 적정생계비(adequate cost of living),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최저생계비 및 적정생계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노후 필요자금산정이 필요한데, 노후 필요자금은 이러한 실제생계비 또는 주관적 생계비를 근거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가 크면 노후설계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노후 생계비로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재무설계를 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대비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후설계 시 생계비 선택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함에 있어 실제생계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관적 생계비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 본 연구는 2009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성영애 (E-mail : sungya@incheon.ac.kr)

것이다. 첫째, 재무설계의 주요 부문인 은퇴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노후필요자금 선정에서 생계비산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생계비선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노인가구의 실제 생계비를 파악하고 이를 이들이 주관적으로 적정하거나 최저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계비와 비교함으로써 노인 가구의 생활수준을 객관적,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실제 및 주관적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지출이론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1. 생계비의 분류

생계비(cost of living)란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일정 기간(1개월)을 단위로 해서 생활을 위해 구입한 생활수단의 질과 양을 화폐지출이라는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생활비와 같은 개념이다(야후용어사전, 2009; 네이트 사전, 2010)1). 가계생계비란 가족구성원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함께 있어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의 총계를 말한다. 생계비 산정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거나 최저 임금을 책정하거나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등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노년기의 생계비산정은 기초생활보장과 더불어 노후설계를 위해 필요하다.

생계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즉 생활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부터, 피구휼비,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가 있다(윤정혜, 이기준, 성영애, 2005). 가장 낮은 수준의 생계비인 피구휼비(pauper level)는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수준의 생계비를 말한다.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는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수준이다.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사회에서 필요한 최저 한도의 사회, 문화적 욕구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수준”(일본 노동과학 연구소, 윤정혜 등, 2005, p.255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표준생계비(normal level)는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말한다.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는 가장 여유로운 수준으로 건강하게 문화생

1) 생계비와 생활비는 같은 용어이지만 생계비는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최저생계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와 생활비는 동일한 용어이지만 되도록 생계비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의 생계비이다.

생계비는 측정방법에 따라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생계비는 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생계비이다. 이때 객관적 기준은 영양상태, 물가, 실태조사 등 과학적인 기준이나 조사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객관적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뉜다. 이론생계비는 가족수, 연령, 성 등에 따라 필요한 소비내용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각 품목의 가격을 곱해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만드는 생계비이다. 반면 실태생계비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설정하여 이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바를 조사하여 산정하는 생계비이다.

주관적 생계비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 판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생계비이다. 주관적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라이덴 방식과 제3자에게 물어보는 방식이 있다. 라이덴 방식은 사회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물어보는 방식이고, 제3자에게 물어보는 방식은 표본설문조사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질문하여 구하는 방식이다(박태규, 1991; 김경자, 2000; 황재한, 2003; 윤정혜 등, 2005).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 방법 중 어떤 것이 우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객관적 생계비인 실태생계비와 이론적 생계비를 중심으로 추정, 활용되어 오고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관적 생계비를 이용하고 있다. 객관적 생계비는 생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문화적인 발달과 더불어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그 한계를 갖는다(김경자, 2000). 또한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지출비중 등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조사에 근거한다는 점,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전체가 느끼는 최저생계의 개념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방법이 더 우위성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박태규, 1991). 이에 따라 가정이 처한 개인적 형편과 사회문화적 수준 및 심리적 만족도 고려하게 되는 주관적 생계비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노후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최저수준, 표준수준, 여유로운 수준 등의 재무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상위수준으로 갈수록 주관적인 측면이 커지게 된다.

2. 생계비 관련 연구

생계비연구는 학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전국단위로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는 곳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있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973년부터 최저생계비를 조사하고 있다. 비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객관적 생계비를 산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1994년부터는 이론생계비, 실태생계비, 주관적 생계비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매년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에서도 매년 단위로 최저생계비 추정하고 있는데, 단신 비혼남녀에서 5인까지 설정된 가계모형에 대해 성격상 표준생계비인 이론적 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나 임금협상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생계비는 가계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윤정혜 등(2005)은 생계비는 가계구성원, 가족구성, 유아, 성인, 노인의 구성비율, 계절,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 비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국내 연구에는 박태규(1991), 김경자(1997, 2000), 황재한(2003), 이선형(2000, 2001), 이선형·이연숙(2002)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중 박태규(1991), 김경자(1997, 2000), 황재한(2003) 등이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를 다루고 있다. 박태규(1991)은 서울지역 400여 가구, 기타도시지역 220가구 및 농촌지역 240가구를 대상으로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라 최저생계비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김경자(2000)는 1999년 36세 이상 49세 이하의 서울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최저수준과 표준적 생활수준, 풍요로운 수준의 생계비를 라이덴 방식을 적용하여 설문조사하여, 주관적 생계비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제소비지출, 자녀수, 교육수준, 자기경제평가에 따라 달라졌으며, 주관적 표준생계비 수준은 실제소비지출, 자가여부, 취업여부, 교육수준, 자기경제평가에 따라, 주관적 유락생계비 수준은 실제소비지출, 자가여부, 교육수준, 자기경제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황재한(2003)도 라이덴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서울, 중소도시, 농촌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소득, 가구규모, 학생유무, 주택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최저생계비수준이 달라짐을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는 주관적 생계비추정의 유용성과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기는 하지만 주로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결과를 노인가구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한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에는 이선형·이연숙(2002)이 있으나 실태생계비만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노인가계의 경우 30-40대의 생계비를 측정한 결과와는 상이할 것으로 가정하여,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생계

비를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표준생계비와 노인부부가 원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조정된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를 산정하였는데, 이를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 생계비를 산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상태 및 취업상태에 따라 노후생계비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와는 달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모두 다루며 이를 비교함으로써 노인가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생계비나 실태생계비를 각각 다루고 이를 비교한 연구는 없는데 본 연구는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관적 생계비와 실태생계비를 비교하는 것은 노인가구의 경제생활만족도와 노후생활비추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어떤 방법이 노후생계비 추정에 있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족-불만족을 설명하는 기대불일치이론에 의하면 기대와 성과를 비교하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이 높아지게 된다(Oliver, 1977, 1980).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생계비는 높으나 실제생계비가 낮다면 생활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실제생활비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생계비와 적정생계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노인단독가구를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주관적 적정생계비에 의해 분류하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위와 같이 분류한 노인단독가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때 노인가구라고 하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노인단독가구란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제생계비는 가계총지출(2006.1.1-12.31)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생계비를 말한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노후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월 필요한 액수이며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적절한 노후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월 필요한 액수이다. 이때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는 부부가구인 경우는 부부가 생활하기 위한 생계비로, 독신가구인 경우는 개인이 생활하기 위한 생계비로 계산하였다.

노인단독가구는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집단1은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집단이며 집단2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같거나 크지만 적정생계비보다는 작은 집단이며 집단3은 실제생계비 수준이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과 같거나 높은 집단을 말한다.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박태규(1991), 김경자(1997, 2000), 황재한(2003), 이선흥(2000, 2001), 이선흥·이연숙(2002)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가구형태(독신, 부부가구),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주거유형, 월평균가계소득, 금융자산을 포함하였다. 가구형태와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및 주거유형은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가구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및 금융자산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2.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본 연구는 2007년에 실시된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에 원표본으로 구축된 가구, 분가한 가구를 추적하여 총 4,590가구 및 개인 7,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가구주란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로서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는 소득과 지출에 있어 극단 값을 갖는 일부 자료(상위1%)를 제외하여 노인단독가구 1,74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은 평균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유형화하였는데 이때 유형분포도는 백분율을 구하였다. 노인단독가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NOVA 및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SPSS17.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4.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740가구 중 58.1%는 부부로 구성된 부부가구이며 41.9%는 노인 혼자 사는 독신가구였다. 가구주는 59.9%가 남성이다. 연령 분포는 70대가 45.8%, 60대가 42.8%이고 70대 이상은 11.4%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무학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의 56.9%는 직업이 없으며 고용주/자영업자인 경우가 29.3%였고 임금근로자는 13.8%였다. 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아 60.8%를 차지하였다. 주거유형은 자가거주자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무상이나 사택거주)인 경우가 14.5%였다.

IV. 연구결과

1.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는 전체적으로 평균 95.1만원 정도이지만 부부가구인 경우는 평균 118.1만원이며, 독신가구의 경우는 평균 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인 2인 가구 700,849원, 1인 가구 418,309원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생계비를 가계소득과 비교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실제생계비수준이 소득수준보다 높지만 단독가구의 경우는 실제생계비가 소득보다 낮았다. 실제생계비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수준보다는 높지만 주관적 적정생계비수준 보다는 낮았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전체가구의 경우는 77.4만원이었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96.9만원, 단독가구인 경우는 50.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40

변수	범주	n	(%)
가구형태	부부가구	1011	(58.1)
	독신가구	729	(41.9)
가구주 성별	남	1043	(59.9)
	여	697	(40.1)
가구주 연령	60대	744	(42.8)
	70대	797	(45.8)
	80대 이상	199	(11.4)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474	(27.2)
	초등학교	652	(37.5)
	중학교	247	(14.2)
	고등학교	249	(14.3)
	대학교 이상	118	(6.8)
가구주 직업	비취업자	990	(56.9)
	임금근로자	240	(13.8)
	고용주/자영업자	510	(29.3)
거주지역	서울	244	(14.0)
	광역시	438	(25.2)
	도	1058	(60.8)
주거유형	자가	1171	(67.3)
	전세	153	(8.8)
	월세	163	(9.4)
	기타(무상,사택)	253	(14.5)
월평균가계소득		968.2(천원)	

<표 2>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 및 적정생계비

단위 : 천원

변수	전체
실제생계비	950.6
(부부가구)	1181.1
(독신가구)	631.0
주관적 최저생계비	774.0
(부부가구)	969.4
(독신가구)	503.1
주관적 적정생계비	1146.5
(부부가구)	1429.7
(독신가구)	756.6
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	176.6
(부부가구)	211.7
(독신가구)	127.9
실제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195.8
(부부가구)	-248.6
(독신가구)	-122.7
월평균가계소득	968.2
(부부가구)	1217.6
(독신가구)	622.3

* 2006년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18,309원, 2인 가구 700,849원임.

이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실제생계비와 비교하여 보면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실제생계비보다는 낮은 편이다. 즉 실제 생활수준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최저생계수준보다는 높은 편이다. 전체가구의 경우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 생계비보다 17.7만원 정도 더 많았고, 부부가구의 겨우는 21.2만원, 독신가구의 겨우는 12.8만원이 더 많았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가계소득과 비교하면 보면 평균적으로는 부부 가구, 독신가구 모두 주관적 최저생계비수준 보다는 가계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적정생계비수준은 전체가구는 평균 114.7원이었다. 부부가구의 경우 143만원, 독신가구의 경우 7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각각 46.0만원, 25.4만원이 많은 수치이다.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은 실제생계비, 소득,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부가구의 생계비수준은 주관적 적정생계비>실제생계비>가계소득>주관적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순으로 높았다. 독신가구의 경우는 주관적 적정생계비>가계소득>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순으로 높았다.

2.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주관적 적정생계비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세 모형의 R²은 각각 .567, .433 및 .39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세 모형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였지만 일부 다른 점도 있었다. 세 모형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소득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를 변수의 영향의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반면 성별 및 금융자산은 모든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제생계비에는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및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쳤고 그중 소득수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보다는 부부가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무학인 경우, 서울거주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제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성별, 직업, 주거유형, 금융자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경우는 성별과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보다는 부부가구인 경우, 연령은 낮을수록,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 고용주나 자영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인 경우, 월세 및 기타인 경우보다는 자가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중 교육수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금융자산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주관적 적정생계비에는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및 가계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비취업자인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 서울거주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

<표 3>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적정생계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범주	실제생계비		최저생계비		적정생계비	
		b	β	b	β	b	β
가구형태 (기준: 부부가구)	독신가구	-135.734	-.094 **	-263.034	-.277 ***	-392.157	-.271 ***
성별 (기준:남)	여	-20.408	-.014	-53.582	-.056	-85.680	-.059
연령		-12.960	-.119 ***	-6.307	-.088 ***	-10.470	-.096 ***
교육수준 (기준:무학)	초등학교	-418.401	-.261 ***	-397.330	-.377 ***	-548.563	-.342 ***
	중학교	-384.060	-.261 ***	-355.132	-.367 ***	-523.828	-.355 ***
	고등학교	-252.814	-.124 ***	-302.100	-.225 ***	-433.973	-.212 ***
	대학교 이상	-253.544	-.125 ***	-230.239	-.172 ***	-341.056	-.167 ***
직업 (기준:비취업자)	임금근로자	-60.311	-.029	-17.420	-.013	-52.158	-.025
	고용주/자영업자	-51.776	-.033	-61.537	-.060 **	-84.976	-.054 *
거주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149.446	-.091 ***	-65.064	-.163 * ***	-157.873	-.096 **
	도	-112.131	-.077 **	-156.149	-.163 ***	-281.263	-.092 ***
주거유형 (기준:자가)	전세	-58.748	-.023	30.151	.018	34.850	.014
	월세	-50.616	-.021	-77.176	-.048 *	-58.298	-.024
	기타(무상,사택)	-6.313	-.003	-60.672	-.046 *	-38.310	-.019
월소득	소득	.590	.734 ***	.170	.322 ***	.251	.312 ***
	소득제곱	-3.8E-5	-.195 ***	-1.8E-5	-.139 *	-3.0E-5	-.150 **
금융자산	금융자산	-.002	-.054	.000	.012	.000	.012
	금융자산제곱	3.8E-8	.123	1.7E-8	.068	2.7E-8	.088
상수		1900.845	***	1674.206	***	2589.331	***
F값		125.337	***	72.948	***	62.742	***
R ²		.567		.433		.396	

* p<.05 ** p<.01 *** p<.001

을수록 적정생계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중 교육수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주거 유형 및 금융자산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단독가구의 분류

<표 4>는 노인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적정생계비 간의 차이에 의해 노인

<표 4>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적정생계비의 비교를 통한 노인단독가구의 분류

집단	구분	n	%
집단1	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	741	(42.6)
집단2	주관적 최저생계비≤실제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523	(30.1)
집단3	실제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476	(27.4)
	합계	1740	(100.0)

<표 5> 노인단독가구 유형에 따른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 및 적정생계비(단위 : 천원)

변수	전체	집단1	집단2	집단3	F값
실제생계비	950.6	616.8 a	912.3 b	1512.3 c	312.121***
(부부가구)	1181.1	815.1 a	1132.1 b	1730.8 c	185.037***
(독신가구)	631.0	388.1 a	563.1 b	1162.5 c	174.783***
주관적 최저생계비	774.0	859.5 a	726.2 b	693.6 b	22.57***
(부부가구)	969.4	1128.7 a	896.0 b	833.9 b	37.759***
(독신가구)	503.1	548.8 a	456.3 b	463.9 b	12.075***
주관적 적정생계비	1146.5	1237.4 a	1169.6 a	979.5 b	19.735***
(부부가구)	1429.7	1604.5 a	1443.9 b	1177.3 c	29.704***
(독신가구)	756.6	813.7 a	733.7 ab	662.8 b	7.642**
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	176.6	-242.6 a	186.1 b	818.7 c	801.719***
(부부가구)	211.7	-313.7 a	236.1 b	896.9 c	549.063***
(독신가구)	127.9	-160.7 a	106.7 b	693.6 c	273.922***
실제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195.8	-620.5 a	-257.2 b	532.8 c	673.427***
(부부가구)	-248.6	-789.5 a	-311.8 b	553.5 c	521.630***
(독신가구)	-122.7	-425.6 a	-170.6 b	499.6 c	209.799***
월소득	968.2	694.3 a	925.7 b	1441.2 c	117.797***
(부부가구)	1217.6	931.6 a	1139.3 b	1690.7 c	62.279***
(독신가구)	622.3	420.4 a	586.4 b	1041.7 c	65.113***
금융자산	8780.9	6537.5 a	9572.9 ab	11402.9 b	8.8131***
부채	10003.4	7427.0 a	9415.4 a	22116.4 b	18.330***

* p<.05 ** p<.01 *** p<.001

a,b,c Scheffe test

가구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집단1은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집단이다. 집단2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같거나 많지만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는 작은 집단이다. 집단3은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와 같거나 큰 집단이다. 총 1,740가구 중 42.6%가 집단1에 속하고 30.1%가 집단2에 속하며, 27.4%가 집단3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72.7%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수준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5>에서는 이들 세 집단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 및 적정생계비, 가계소득, 금융자산 및 부채규모를 살펴보았다. 가계소득, 금융자산 및 부채규모는 집단1보다는 집단2가, 집단2보다는 집단3이 더 높은 경향이었다. 실제생계비도 전체대상 뿐만 아니라 부부가구와 독신가구를 따로 보아도 집단3의 경우 컸고 집단1의 경우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의 경우는 전체, 부부가구, 독신가구 모두의 경우 집단1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집단1의 경우 실제생계비는 가장 낮은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저생계비나 적정생계비수준은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집단3의 경우는 실제생계비는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반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와의 차

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서 집단1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는 31.3만원이 부족하고 독신가구의 경우는 16.1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2의 경우는 부부가구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23.6만원이 더 많고, 독신가구는 10.7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3의 경우는 부부가구의 경우는 89.7만원, 독신가구는 69.4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는 부부가구는 79.0만원, 독신가구는 42.6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2의 경우는 적정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실제생계비지출이 부부가구 31.2만원, 독신가구 17.1만원이 부족하였다. 반면 집단3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생계비가 적정생계비보다 부부가구는 평균 55.4만원, 독신가구의 경우는 50.0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는 실제생계비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준다.

4. 노인단독가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세 집단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모든 특성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유형

변수	범주	전체	집단1	집단2	집단3	χ^2 test
		1740 (100.0)	741 (42.6)	523 (30.1)	476 (27.4)	
가구형태	부부가구	(58.1)	39.3	31.8	29.0	10.870***
	독신가구	(41.9)	42.2	27.7	25.1	
가구주 성별	남	(59.9)	39.5	31.9	28.6	10.251***
	여	(40.1)	47.2	27.3	25.5	
가구주 연령	60대	(42.8)	34.1	30.5	35.3	
	70대	(45.8)	45.7	32.2	22.1	71.141***
	80대 이상	(11.4)	61.8	19.6	18.6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27.2)	51.9	28.7	19.4	
	초등학교	(37.5)	40.8	30.5	28.7	
	중학교	(14.2)	44.5	23.5	32.0	45.631***
	고등학교	(14.3)	31.1	37.8	30.1	
	대학교 이상	(6.8)	33.1	30.5	36.4	
가구주 직업	비취업자	(56.9)	47.9	29.0	23.1	
	임금근로자	(13.8)	40.4	27.1	32.5	35.169***
	고용주/자영업자	(29.3)	33.3	33.5	33.1	
거주지역	서울	(14.0)	46.7	29.5	23.4	
	광역시	(25.2)	51.4	26.5	21.7	26.876***
	도	(60.8)	38.0	31.4	30.6	
주거유형	자가	(67.3)	37.6	31.8	30.7	
	전세	(8.8)	58.8	24.2	17.0	47.154***
	월세	(9.4)	56.4	21.5	22.1	
	기타(무상,사택)	(14.5)	47.0	31.2	21.7	

* p<.05 ** p<.01 *** p<.001

<표 7> 노인단독가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

변수	범주	집단1	집단3
가구형태 (기준: 부부가구)	독신가구	-.330	.329
성별 (기준:남)	여	.123	.301
연령		.034**	-.001
교육수준 (기준: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112 -.013 .427 -.374	-.030 .234 .582 -.076
직업 (기준:비취업자)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264 -.103	.240 -.016
거주지역 (기준:서울)	광역시 도	.234 -.182	.082 .368
주거유형 (기준: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사택)	.395 .528* .025	-.085 .330 -.168
월소득	소득 소득제곱	-.001*** .000***	.001*** .000
금융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제곱	.000 .000	.000 .000
상수		-1.426	-1.705
-2로그우도		3.405E03***	
Nagelkerk R ²		.206	

* p<.05 ** p<.01 *** p<.001

에 따라 분포도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구보다는 독신가구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연령은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을수록,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인 경우, 광역시 거주자인 경우, 전세 및 월세거주자인 경우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집단1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그 반대인 경우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 높은 집단3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은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집단2를 기준으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로짓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유사 R2의 수준도 .206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단순관계를 보았을 때는 모든 변수에 따라 집단분포가 달라졌는데 반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령, 주거유형, 소득수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집단2와 비교하여 집단1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가 그러하고, 집단3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가계소득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거주자보다는 월세거주자의 경우, 소득은 감소할수록 집단2보다는 집단1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2보다는 집단3에 속할 가능성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단순관계와 다항로지스틱의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가계소득을 통제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은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구형태,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가계유형의 분포가 달라진 것은 이들 특성에 따라 가계소득이 차이가 나타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수준보다는 낮은지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수준보다 높은지는 가계소득수준의 영향이 가장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집단1에 속할 가능성에는 연령과 주거유형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집단3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단3에서 집단2로 넘어가거나 집단2에서 집단3으로 넘어가는 데는 서로 다른 변수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주관적 적정생계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생계비를 이용하여 노인 가구들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

<표 8> 생계비산정의 수준(순위)

	가계소득	실제생계비	주관적 적정 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전체	2	3	1	4
집단1	3	4	1	2
집단2	2	3	1	4
집단3	2	1	3	4

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부부가구의 생계비수준은 주관적 적정생계비>가계소득>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최저생계비순으로, 독신가구의 경우는 주관적 적정생계비>실제생계비>가계소득>주관적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의 최저생계비순으로 높았다. 예측대로 두 집단 모두 주관적 적정생계비 수준이 가장 높고 실제생계비가 중간이며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보건복지부 최저생계 수준이 낮았다. 가계 소득의 위치는 중간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이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노후생계비의 합리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노인에 따라 중간정도 수준의 생계비가 서로 달랐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내릴 수 있었다. 실제생계비도 노인에 따라 서로 다르며, 노인에 따라 주관적 생계비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비교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총 1,740가구 중 42.6%가 집단1(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집단)에 속하고, 30.1%가 집단2(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같거나 크지만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는 작은 집단)에 속하며, 27.4%가 집단3(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와 같거나 큰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가구(72.7%)의 경우 실제 생계비가 적정생계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2.6%의 가구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인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편인 것이다.

집단1의 경우는 주관적 적정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가계소득>실제생계비 순으로, 집단2의 경우는 주관적 적정생계비>가계소득>실제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순으로, 집단3의 경우는 실제생계비>가계소득>주관적 적정생계비>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순으로 생계비수준이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비교하여 본 결과 집단간에 차이가 커 노후생계비의 산정과 선택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생계비산정 방법은 모든 집단에 있어 중간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생계비는 집단에 따라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고, 주관적 적정생

계비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낮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중간정도 수준의 생계비산정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노후생계비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제생계비가 주관적인 최저생계비나 적정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실제생계비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면서 주관적인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지출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최저생계비나 적정생계비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집단의 경제생활만족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해 준다. 노인에서도 고령노인이며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 집단1의 생계비산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생계비는 가장 높은데 실제생계비는 가장 낮아, 기대는 매우 높으나 실제생활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는 실제생계비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주관적 생계비산정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반면 집단3의 경우는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며 실제생활비도 높은데 주관적인 생계비수준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 생활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설계나 상담, 교육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무설계사는 노후설계 시 고객의 주관적 제안에 입각하여 노후설계제안서를 만들기보다는 실제소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주관적 적정생계비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매우 많은 변수가 작용함을 보여주는데 반해 실제생계비수준이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소득수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집단비교한 단순 분석한 결과는 가구형태,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가계유형의 분포가 달라지고 있지만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많은 변수의 영향이 사라지고 가계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은지, 실제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수준보다 높은지는 가계소득수준의 영향이 가장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집단1에 속할 가능성에는 연령과 주거유형이 영향

을 미치는데 반해 집단3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집단1의 경우는 노인 중 고령자, 월세거주자 및 저소득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고, 집단3의 경우는 고소득자가 많았다. 이는 집단2에서 집단1로 넘어가는데 작용하는 변인은 집단2에서 집단3으로 넘어가는 작용하는 변인과는 다른 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이나 자가거주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집단1에 속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집단3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든 역시 소득확보가 관건이며, 주거 생활의 안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설계는 생계비의 산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생계비의 추정치로서의 바람직한 척도는 소득이 될 수 있음을 결론내릴 수 있으며, 소득에 근거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 노인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제의 운영에 있어서 목표 설정이나 연금책정시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개인노후설계에 있어서도 주관적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계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노후생활의 만족도는 적정 소득수준의 확보만으로는 높아지지 않으며 이때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주관적 적정 생계비에 대한 노인집단간의 비교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노후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집단3을 제외하고는 실제 생계비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노인가구중 상당수는 실제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생계비지원책 또는 취업알선 등의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대상이 노인단독가구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자녀의 동거하고 있는 가계에 대한 시사점은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노인에 도달할 세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은퇴에 하지 않고 은퇴설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1992). 도시가계 생계비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37-148
김경자(2000). 라이엔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

- 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43-52.
네이트사전, <http://www.nate.com>.
박태규(1991). 韓國의 最低生計費 推計에 관한 研究 - 라이엔 方法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5(1), 297-387.
야후용어사전.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
여윤경 · 정순희 · 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윤정혜 · 이기춘 · 성영애(2005). 가계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진호(1997). 라이프 사이클 생계비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 산업경제연구소*, 11(1), 155-182.
이선흥(2000).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최저 생계비 산정. *노인복지연구*, 10(1), 61-88.
이선흥(2001).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 방안. *한국 노년학연구*, 10(1), 5-30.
이선흥 · 이연숙(2002).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 생계비 산정 -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산정. *대한가정학회지*, 40(4), 139-152.
이선흥 · 김근홍, 노인가계 생계비 산정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 민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473-486.
황재한(2003). 한국의 최저생계비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4(3), 213-234.
Oliver R. L, (1977). Effect of Expectation and Disconfirmation on Postexposure Product Evaluations -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p. 480.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3), p. 460.

접 수 일 : 2010년 09월 06일
 심 사 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2일